

##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정리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사항의 완화 및 폐지에 따른 사항 개정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환경부지침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및 수도권 인근 시·군·구와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인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정리
  - 법 제17조 → 법 제26조
  - 법 제13조제4항 → 법 제13조제3항
- 가정쓰레기 → 생활폐기물
- 일반폐기물 → 생활폐기물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의 폐지 및 완화
  -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업자에 대한 보고의무규정 폐지
  - 봉투판매대금 납부를 시금고에서 금융기관으로 완화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평균 23.3% 인상
  - 10ℓ : 160원 → 200원    ▪ 20ℓ : 790원 → 960원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45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13

제 출 자 : 건설교통위원장

□ 수정이유

- 현시기는 IMF지원 경제위기에 처하여 온 시민이 전례없이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나 부천시에서는 청소행정의 적자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10ℓ → 160원, 50ℓ → 790원으로 현행대로 수정

###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중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용량 \ 용도	일반용 및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
3ℓ	60원	
5ℓ	90원	
10ℓ	160원	
20ℓ	290원	
30ℓ	470원	
50ℓ	790원	
100ℓ	1,560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6)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별표 6)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용도 \ 용량	일반용 및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	용도 \ 용량	일반용 및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	
3ℓ	60		3ℓ	70		
5ℓ	90		5ℓ	110		
10ℓ	160		10ℓ	200		
20ℓ	290		20ℓ	390		
30ℓ	470		30ℓ	470		
50ℓ	790		50ℓ	960		
100ℓ	1,560		100ℓ	1,910		
※ 공공용 봉투는 무료 배부함.			※ 공공용 봉투는 무료 배부함.			

[수정안 포함]

###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5호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예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한다.

제8조·제9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행규칙 제7조”를 “시행규칙 제6조”로 동조 제3항중 “처리업자”를 “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처리업자”를 “수집·운반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①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 제16조중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 제17조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4항중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로 한다.
- 제19조의 제목·동조 제1항본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별표7)을 삭제한다.
- 제21조중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한다.
- 제24조중 “시급고”를 “금융기관”으로 한다.
- 제26조제2항제1호중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제29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 제30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생략)</p> <p>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p> <p>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u></p>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생활폐기물.....  
.....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  
.....

5.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폐기물.....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

(삭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등) ①(생략)

제4조(청결유지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②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계획을 수립,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건물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

(삭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사가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등)

(삭제)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쓰레기

제7조(생활폐기물.....)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②~④(현행과 같음)

⑤건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축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⑤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제8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

제8조(생활폐기물.....) ①.....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야 한다.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3.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

②.....생활폐기물.....  
.....  
.....  
.....  
.....  
.....  
.....

제9조(.....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1. ....생활폐기물.....  
.....
2. ....생활폐기물.....  
.....  
.....  
.....  
.....
3. ....생활폐기물.....  
.....  
.....  
.....  
.....

제10조(생활폐기물.....)..... ①생활폐기물.....  
.....  
.....  
.....생활폐기물.....  
.....

②~④(현행과 같음)



⑤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쓰레기봉투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기존 건축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반폐기물 배출량을 참작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상차하거나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갖다 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제12조(생활폐기물.....) ①.....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시행규칙 제6조.....

②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③.....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번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라. (생략)

마.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획서

바.~사. (생략)

아.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생략)

⑥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삭제)

①.....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②.....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③생활폐기물.....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생활폐기물.....  
.....

바.~사. (현행과 같음)  
아. ....생활폐기물.....  
.....

④(현행 제5항과 같음)

⑤.....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

제14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

제14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삭제)

①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법 제26조..... 폐기물..... 폐기물.....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업무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 ①.....

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한다.

②~③(생략)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③(생략)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③(생략)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4. 다량일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생략)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②~③(현행과 같음)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산업자원부장관.....

⑤(현행과 같음)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제19조(생활폐기물.....) ① 법 제13조제3항..... 생활폐기물.....

1.~3. (현행과 같음)

(삭제)

②(현행과 같음)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쓰레기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대금을 선납으로 하며 시급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생략)  
 ②(생략)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생략)

제28조(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4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  
 .....  
 .....금융기관.....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28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행위위탁) .....  
 .....생활폐기물.....  
 .....  
 .....  
 제30조(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용도 용량	일반용 및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
3ℓ	60	
5ℓ	90	
10ℓ	160	
20ℓ	290	
30ℓ	470	
50ℓ	790	
100ℓ	1560	

※ 공공용 봉투는 무료 배부함.

-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생략)

(별표 7)

다량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대 상	기준	처 리 수 수 료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다량일반폐기물(숙박업소, 식품점, 객업소, 제조업체, 백화점 등 대형상가, 기업체 등)	톤당	54,600	45,900	8,700
건축폐기물	톤당	18,000	10,000	8,000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현행과 같음)

-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현행과 같음)

(삭제)